

갈현2동 주민자치회 회의록

회 의 명	2024년 3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일 시	2024. 3. 12.(화) 19:00				
장 소	갈현2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참석대상 (참석인원)	주민자치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총 38명)				
회의구분	정기회의	임원회의	운영진회의	분과회의	민관협력회의
	○				
회의내용	■ 운영보고				
	- 2024년 2월 수강료 징수·집행 현황 및 북카페 운영 수입·지출 현황				
	- 주민자치회 사업 집행 현황 보고(지명희 간사 진행)				
	- 주민자치회 운영 및 활동 보고(민경애 사무국장 진행)				
	■ 보고사항				
	○ 2024. 주빌리 오케스트라 봉사 현황				
	2월	3	17	24	
		강대식	김경미	김남곤	
	3월	2	9	16	23
		김종팔	김승리	김부호	김선옥
	4월	6	13	20	27
		김명수	지명희	김창현	김춘화
	※ 봉사시간 : 10:00~13:00, 수업시간 : 10:30~12:30				
	○ 2024. 자치회관프로그램 2분기 운영현황				
	- 접수기간 : 2024. 3. 18.(월)~프로그램 총원 시까지				
	- 수강기간 : 2024. 4. 15.(목)~6. 28.(금)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갈현2동주민센터 2층 주민자치회 사무실				
	- 접수방법 : 선착순 본인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 2024. 2분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일정(안)

구 분	프로그램명	요일	시간	정원 (명)	수강료 (3개월)	재료비 (3개월)	장소
시민교육	컴 퓨 터 기 초	월 수	09:30~11:00	15	45,000원	-	4층 컴퓨터실
	스 마 트 폰 활 용	월 수	11:00~12:30	15	45,000원	-	
	생 활 영 어	수	16:00~18:00	15	30,000원	-	3층소강좌실
문화여가	생 활 요 가 A	월 수	16:00~17:30	25	45,000원	-	3층 다목적실
	생 활 요 가 B	월 수	17:30~19:00	25	45,000원	-	
	수 채 화 배 우 기	월 수	09:30~11:00	16	45,000원	재 료 비 별 도	
	보 태 니 컬 아 트	금	09:30~12:00	16	45,000원		
	시 니 어 모 델 A	화	13:30~14:30	15	30,000원	-	
	시 니 어 모 델 B	화	14:30~15:30	15	30,000원	-	

※ 프로그램은 자치회관 사정에 따라 휴강 될 수 있음

○ 각 분과회의 논의 진행 내용 공유

- 자치회관운영→동보물찾기→맛있는베토벤→소통과나눔→꿈꾸는미래

■ 안전사항

○ 2024. 자치회관프로그램 강좌신설의 건

- 2024. 3분기 강좌 신설에 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2강좌 정도 신설하고자 함

① 역사보드게임 ② 재봉틀교실 ③ 칼림바교실 ④ 손으로말해요 수어교실

· 의결사항 : 원안에 대한 33명의 동의와 재청으로 의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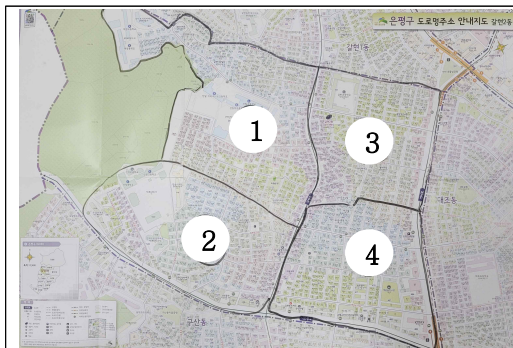
○ 2024. 상반기 역량강화 워크숍 일정의 건

- 22대 선거로 인해 4월 정기회의 진행이 불가하여 선거 후 의제 개발 워크숍과 정기회의를 병행하고자 함.(날짜는 4.16. or 4.23. 추후 공지)

· 의결사항 : 원안에 대한 33명의 동의와 재청으로 의결함

○ 2025. 마을의제 발굴 권역별 일정의 건

- 2025. 마을의제 발굴을 위한 각 분과 권역별 지역 지정(운영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1권역(좌월공원일대)	소통과나눔분과
2권역(우남아파트일대)	맛있는베토벤분과
3권역(갈현초일대)	동보물찾기분과
4구역(길마공원일대)	꿈꾸는미래분과
주민센터 앞	자치회관운영분과

· 의결사항 : 원안에 대한 33명의 동의와 재청으로 의결함

○ 2024.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안)의 건

- 조례 및 운영세칙 표준안을 참고 운영세칙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운영세칙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6개 동 공동개정 사항 반영 및 운영세칙 상의 용어·구분·내용 등의 애매한 조항을 논의과정을 거쳐 수정하여 명확한 운영세칙을 개정하고자 함

- 5월 정기회의 시 운영세칙 개정안을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함.

※ 운영세칙 개정위원회 : 회장, 부회장, 감사, 분과위원장, 분과 총무, 사무국, 담당주무관

- 의결사항 : 원안에 대한 33명의 동의와 재청으로 의결함

■ 기타사항

○ 국회의원 선거 관련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선거법 안내

□ 주민자치위원 선거운동 금지사항

○ 상시제한

- **선거운동 제한**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생략)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제29조(주민자치회의의 구성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주민자치회’ 및 그 위원은「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회’ 및 그 위원에 관한 규정(제60조 제1항, 제86조 제1항, 제103조 제2항 등)이 적용됨 (중앙선관위, '19.6.24)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선거운동 가능

- **선거관련 금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생략)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項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삭제 <2010. 1. 25.>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90일 제한('24. 1. 11.(목))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 제한**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② (생략)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 ▶ 주민자치위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자, 토론자,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 등)가 되고자 할 때 **선거일 전 90일(24년 1월 11일)까지 사퇴**해야 함

- ▶ 사퇴의 시기는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을 준용해 소속 주민자치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를 그 시기로 봄.

※ 공선법 제60조 2항을 자동 복직의 근거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 위원이 아닌 분과원은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는 경우 사퇴의 의무는 없으나, 가급적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하는 동안은 분과원 활동을 자제

□ 주민자치회의 활동 제한

○ 선거기간 중 제한('24. 3. 28.(목) ~ 4. 10.(수))

- **주민자치회 회의 등 금지** : 각종집회 등의 제한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 60일 제한('24. 2. 10.(토))

- **행사 개최 및 후원 금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회의사진

